

ISO / DIS 14001

환경경영체제

· 사용지침규격(초안)

연재



[ISO/CS]에서 작성할 것임



오늘날의 모든 조직은 그들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환경방침과 목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성과를 달성하고 또 그 성과를 증명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법률이 점차 엄격해지고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경제적 또는 다른 수단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직들은 환경성과에 대하여 “환경검토” 또는 “환경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그러한 “검토”나 “심사”만으로는 조직에서의 환경성과가 법규 및 방침 상의 요건에 적합하고 계속해서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영경영체제를 제반 경영활동과 접목시켜 체계적인 경영체제내에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 환경영경영체제를 작성하는 목적은 다른 경영 요건들과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영경영체제 요소들을 조직들에게 제공하고 조직들이 환경 및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규격들은 다른 국제규격들과 마찬가지로 비관세 무역장벽을 만들거나 조직의 법적 의무를 증가 또는 변경하는데 사용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이 국제규격은 그러한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격은 모든 형태 및 규모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환경경영체제 시행의 성공여부는 조직의 모든 계층, 특히 최고 경영자가 환경영경영체제를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조직은 이런 종류의 시스템을 통하

여 환경방침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며 그 달성정도를 제3자에게 증명하는 절차를 규정함은 물론, 그런 절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규격의 전반적인 목적은 사회 경제적인 요구사항들과 균형을 이루어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많은 요건들이 어떤 때에는 현재의 규정 내용 그대로 언급되거나 또는 수정되어 언급되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직의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인증/등록 및/또는 자체선언을 위한 요건들을 규정한 이 규격과 환경영경영체제의 이행이나 개선을 위해 조직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침문서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환경경영은 전략적이고 경쟁적인 면을 포함하여 폭넓은 분의 문제들을 다룬다.

조직은 이 규격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적절한 환

환경경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증 할 수 있다.

환경경영 기술을 지원하는 지침은 별도의 국제규격으로 규정 한다.

이 규격에는 인증/등록 및/또는 자체선언 목적을 위한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한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요건들만이 수록된다.

광범위한 환경영경영체제 문제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한 조직들은 ISO 14000×(환경경영체제—원칙, 체계 및 지원기술에 대한 일반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이 규격은 관련법규나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환경방침에 언급된 조직의 실천의지를 넘어선 환경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요건들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성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행하는 두 조직이 있을 경우 이 두 조직 모두 이 규격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경영경영기술들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격의 채택 그 자체가 최적의 환경성과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환경영경영체제를 통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기술(EVABAT)을 검토한다. 이때, 그러한 기술의 비용 효과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규격은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건이나 측면을 논하거나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환경영경영체제 요소들과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건들을 통합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인증/등록과정에는 환경영경영체제만이 적용될 것이다. 이 규격은 품질경영체제 규격인 ISO 9000시리즈와 공통적인 경영체제 원칙을 갖고 있다. 각 조직은 환경영경영체제를 위한 토대로서 ISO 9000 시리즈와 같은 현존하는 경영체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영체제의 여러 요소들이 적용될 시에 적용 목적과 이해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품질경영체제가 고객의 요구를 다루는 것이라면 환경영경영체제는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와 환경보호에 대한 진보되는 사회적 요구를 다루는 것이다.

이 규격에 규정된 경영체제 요건들은 기존의 경영체제 요건들과 분리시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경영체제 요소들을 채택함으로

써 관련요건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적용범위

이 국제규격은 조직이 법적요건과 중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품질방침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요건들을 규정한다.

조직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제반 환경측면들이 이 규격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 규격 자체는 특정 환경성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국제규격은 다음 각 사항을 원하는 조직에게 적용가능하다.

- 환경경영체제를 시행하고 유지·개선하고자 할 때
- 조직이 정한 환경방침과의 적합성을 스스로 보증하고자 할 때
- 그 적합성을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고자 할 때

d) 외부기관으로부터 환경영경영체제에 대한 인증/등록을 획득하려고 할 때

e) 규격에의 적합성을 자체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하고자 할 때

이 규격에 규정된 모든 요건들은 어떠한 환경영경영체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 적용 범위는 조직의 환경방침, 활동내용 및 조직이 운용되고 있는 환경여건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좌우된다.

이 규격의 부속서 A에는 참고로 이 규격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ISO 14001의 적용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주) 이 규격의 관련사항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규격과 부속서에 제시된 주요 항목은 관련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이 규격의 4.2.3항과 부속서의 A.4.3.2항은 둘다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이 규격의 4.4.4항과 부속서의 A.4.4.4항은 둘다 환경영영체제 심사를 다룬다.

참조규격

[없음]

부속서 A (참고)

ISO 14001 규격 사용에 관한 지침

환경경영체제 규격에 관한 이 부속서는 환경영영체제 요건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규격해석상의 오해를 막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 부속서는 ISO 14001 규격요건만을 언급한다.

A.4 환경영영체제

A.4.0 일반사항

ISO 14001 규격에서 언급

된 환경영영체제의 시행으로 환경성과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SO 14001 규격은 개선 방안을 확인,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주기적으로 그들의 환경영영체제를 검토하고 평가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환경영영체제의 개선은 부가적으로 환경성과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환경경영체제는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도록 체계적인 과정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개선 달성을 달성정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다른 여건들을 고려하여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도입으로 환경성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기대될 수 있을지라도, 환경영영체제는 조직이 설정한 환경성과의 수준을 달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이해해야 한다.

환경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 자체로써 환경적 영향을 즉시 감소시키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은 조직이 활동을 영위하는 영역을 정할 자유와 융통성을 갖고 있으며 전체 조직 또는 특정 운영단위들 또는 조직의 활동들을 고려해서 ISO 4001 규격 시행을 선택할 수 있다.

ISO 14001 규격이 특정 운

영단위 또는 활동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경우, 조직의 다른 부문들에 의해서 개발된 방침과 절차들은 ISO 14001 규격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단, 이들 방침과 절차들은 ISO 14001 규격에 해당하는 특정 운영단위 또는 활동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영체제의 세부사항과 복잡성, 문서화 범위 및 이에 충당된 자원들은 조직의 규모와 조직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특히, 중소 기업의 경우에 그려하다.

환경적인 사항들과 종체적인 경영체계와의 통합은 환경영영체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와줄 뿐만아니라 효율성과 역할의 명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ISO 14001 규격은 “계획, 실행, 체크 및 검토”라는 동적 순환 과정에 기본을 둔 핵심적인 경영체제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환경경영체제는 조직의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야 한다.

a) 조직에 관련되는 환경방침의 수립

b) 환경영향의 중대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의 과거, 현재 또는 계획된 활동들 그리고 제품 또는 서비스로 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측면들의 확인

- c) 관련된 법률 및 규정요건들의 확인
- d) 우선순위 확인 그리고 적절한 환경목표와 세부목표의 설정
- e) 환경방침을 시행하고 환경 목표와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프로그램의 확립
- f) 환경방침이 준수되고 환경영향체계가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계획, 관리, 감시, 시정조치, 심사 그리고 검토활동의 조장
- g)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적응력

A.4.1 환경방침

환경방침은 조직의 환경성과를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조직의 환경영향체계의 시행과 개선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환경방침은 적용되는 법률의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환경방침은 조직의 환경목표와 세부목표 설정시 그 근거를 제공한다. 환경방침은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변화하는 여건과 정보를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방침의 적용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그 조직이 속해 있는 모기관의 환경방침 범위내에서 조직의 환경방침을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그리고 모기관이 하나일 경우 그 모기관으로부터 환경방침을 승인 받아야 한다.

주)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집행책임을 맡고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말할 수 있다.

A.4.2 환경계획

A.4.2.1 환경측면

본 항은 조직이 중대한 환경적 측면을 확인하는 과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중대한 환경적 측면은 조직의 환경영향체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밀을 만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이미 개발된 정보는 이 과정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조직은 고려되어지고 있는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 실제 어느 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조직은 조직의 현재와 과거의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inputs와 outputs를 고려하여 환경적 측면을 결정한다.

현재 환경영향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조직은 우선 검토를 통하여 환경과 관련해서 조직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목적은 환경영향체

체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조직과 관련된 모든 환경적 측면들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있다.

환경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검토는 다음과 같은 주요 4개 부문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a) 법률 및 규정요건
- b) 중대한 환경적 측면의 확인
- c) 현행 모든 환경영향체계 및 절차의 조사
- d) 이전에 발생된 사고 조사 를 통한 피드백 평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조직내의 정상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운영상태 및 잠재적인 긴급사태를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활동에 적합한 방법에는 조직의 활동성격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활용, 인터뷰, 직접적인 조사와 측정, 이전에 행해진 심사결과 또는 기타 검토활동이 활용될 수 있다.

운영단위에서 행해지는 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환경적 측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대기로의 방사
- b) 물로의 방출
- c) 폐기물 관리
- d) 토양 오염
- e)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f) 원자재 및 천연자원의 활용
- g) 기타 지역적인 환경문제들

이 과정은 합리적으로 미리 알 수 있는 상황 또는 긴급사태와 관련된 사실적/잠재적/중대한 영향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조건, 조업중단 그리고 조업제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상세한 전과정 평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조직은 각 제품, 부품 또는 원자재 입력을 평가 해서는 않된다.

조직은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측면들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주를 선정할 수 있다.

제품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 영향력은 조직의 거래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제품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 하나의 입력자료만을 변경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적 측면들을 변경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의 계약자 또는 공급자는 비교적인 거의 환경적 측면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조직들이 그들 제품의 사용과 폐기기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조직들은 가능한한 제품의 적절한 취급과 처리를 위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은 조직의 법적 의무사

항을 변경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A.4.2.2 법률 및 기타 규정요건
조직이 요건 이해의무를 서면 동의할 수 있는 기타 규정요건들에 대한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 산업 관행규약
- b) 공공기관과의 합의서
- c) 비규정 지침

A.4.2.3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환경목표는 특정적이어야 하며, 세부목표는 가능한한 측정가능해야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예방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할 시에, 조직은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 최선의,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할 시에, 조직은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 최선의,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조직의 재정적 요건에 대한 언급은 조직이 의무적으로 환경비용 회계방법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A.4.2.4 환경영향 추진계획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환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추진 계획서는 조직의 환경방침 시행 일정 및 책임자 선정을 포함하여 환경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이 추진계획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특정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언급할 수 있다. 추진계획서에는 신규 활동에 대한 환경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서에는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계획/설계/생산/마케팅 그리고 폐기처리단계에 대한 환경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현재의 활동과 신규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품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설계, 재료, 생산공정, 사용 그리고 최종 폐기처리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설치 또는 중대한 공정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가 계획, 설계, 건설, 업무위탁, 운영 그리고 조직이 결정한 적절한 시기의 업무위탁 해제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4.3 시행 및 운영

A.4.3.1 구조 및 책임

환경경영체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그 조직의 모든 직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환경책임은 환경기능에 국한되어서는 않되며, 운영경영이나 환경 이외의 기타 기능과 같은 조직의 다른 부문들에 대한 환경책임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영체제 시행 의지는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표명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환경방침을 설정하고 환경영영체제가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표명의 일환으로서 최고 경영자는 환경영영체제 시행에 대한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특정 경영자 대리인을 지명해야 한다. 규모가 크거나 또는 복잡한 조직에 있어서는 한 명 이상의 지명인 대리인을 두어도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명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환경영영체제가 시행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핵심 책임사항들이 잘 규정되어 관계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A.4.3.2. 훈련, 지식과 자격

조직은 훈련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조직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들이 그

들 직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 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경영자는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특히 전문 환경영영기능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 능력 및 훈련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A.4.3.3. 의사소통

조직은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관련 정보와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문서화하며 회신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절차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검토하는 절차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대한 회신에 조직의 운영과 연계된 환경영향 관련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비상계획 및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한 공공기관들과의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도 언급되어져야 한다.

A.4.3.4. 환경 문서화

문서화의 상세함에 대한 정도는 환경영영체제의 요건과 그 요건들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영영체제의 특정 부문 운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조직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경영체제에 대한 문서와 통합, 공유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매뉴얼의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관련 문서에는 다음사항을 수록할 수 있다.

- a) 공정에 관한 정보
- b) 조직도
- c) 내부규격과 운영절차
- d) 현장의 비상계획

A.4.3.5 문서관리

ISO 14001 규격의 본 항목을 규정한 목적은 환경영영체제를 시행하는데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이 문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은 환경영영체제의 효과적인 시행과 환경성과인 것이지 복잡한 문서관리체계는 아니다.

A.4.3.6 운영관리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음)

A.4.3.7 긴급사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음)

A.4.4 점검과 시정조치

A.4.4.1 감시 및 측정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음)

A.4.4.2 부적합사항 및 시정/예방조치

부적합사항들을 조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할 때, 조직은 동 절차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부적합 원인을 확인
- 필요한 시정조치의 확인 및 시행
- 부적합 사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조치들의 시행 및 수정
- 시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문서절차의 모든 변경사항의 기록

상황에 따라 이러한 시정/예방조치는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으며 최소한의 형식적인 계획을 수반할 수 있으며, 또는 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시정조치의 수준에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A.4.4.3 기록

기록의 확인, 유지 및 처리를 위한 절차는 환경영향체제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록들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계획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가 만족되어진 정도를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 관련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을 수록할 수 있다.

- a) 적용된 환경 법규 또는 기

- 타 규정요건들에 관한 정보
- b) 불만사항에 대한 기록
- c) 훈련기록
- d) 제품공정에 대한 정보
- e) 제품 정보
- f) 검사, 유지 및 교정에 관한 기록
- g) 계약자 및 공급자에 관한 정보
- h) 사고 기록
- i) 긴급사태에 대한 예방/대응 정보

- j) 중대한 환경영향 기록
- k) 심사결과
- l) 경영자 검토

기밀유지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A.4.4.4 환경영향체제 실사

심사프로그램 및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심사시 고려되어야 할 활동 및 분야
- b) 심사 횟수
- c) 심사관리 및 시행과 관련된 책임
- d) 심사결과의 전달(communication)
- e) 심사원의 자격
- f) 심사수행 방법

심사는 조직이 선정한 조직 내부인이나 외부인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환경경영체제의 지속적인 개선, 적합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경영자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경영향체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토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비록 한번에 모든 환경영시스템 요건들을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검토과정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방침, 목표 및 절차등에 대한 검토는 이를 규정한 경영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a) 심사결과
- b)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달성을 정도
- c) 변화하고 있는 상황 및 정보에 따른 환경영향시스템의 지속적인 적합성 여부
- d)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

심사시 관찰한 내용, 결론 및 권고사항 등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참고목록]

(발행당시에 재정되어 있는 '14000 시리즈' 문서는 여기에 수록되어야 한다.)

A.4.4.5 정성자 검토